

의안번호	제3118호
의결	2026. . .
연월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6. 7. 10.

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1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7. 10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산림재난방지법」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의 위원회 명칭 반영(안 제명,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신설된 상위법의 제명 반영(안 제1조 및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3조
- 2) 「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」 제1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7700(2026. 4. 20.)호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902호

가) 예고기간: 2026. 4. 21.~2026. 5. 11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불임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불임

4. 본문: 불임과 같음

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9”를 “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3조”로, 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”를 “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”를 “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32조의7제6항”을 “「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」 제14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고성군</u> <u>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</u> <u>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	<u>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</u> <u>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</u> <u>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 9에 따라 고성군 <u>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</u>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기능) 고성군 <u>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4. (생략) 제6조(간사 및 서기) ① 「<u>산림보호법 시행령</u>」 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군수가 임명한다. ② ~ ④ (생략)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<u>산림재난방지법</u>」 제23조----- <u>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 제2조(기능) ----- <u>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제6조(간사 및 서기) ① 「<u>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</u>」 제14조제5항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 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정에 따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,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녹지공원과장 김 주 화

□ 산림재난방지법

(시행 2026. 2. 1.) (법률 제20751호, 2025. 1. 31., 제정)

제23조(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)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소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

(시행 2026. 2. 1.) (대통령령 제36066호, 2026. 1. 30., 제정)

제14조(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정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